



國 際

動 向



EPO 特許出願書様式變更

—1984. 1. 4 부터 使用—

1984年 1月 4日부터 다음과 같이 유럽特許出願書가 變更된다.

1. Section 1.2"를 제목과 數字는 그대로 두고 Section 1.2(1)"로 變更한다.

2. 다음과 같은 제목과 數字를 가진 Section 1.2(2)"를 新設한다.

EPC 158(2)의 첫번째 문장에 따른 公式言語로 EPO에 提出되지 않고 PCT公告番號에 의한
國際出願

(87) PCT 公告番號

(51) 國際特許分類(IPC)

(86) PCT 出願番號

(87) PCT 公報發刊號數 및 日字

(21) (유럽) 出願番號

3. Section 11.6"은 제목과 數字를 그대로 두고 Section 11.6(1)"로 한다.

4. 다음과 같이 Section 11.6(2)"를 新設함.

異議申請無

(11) 公告番號

(51) 國際特許分類

(45) 特許明細書公開日

5. Section 11.12를 다음과 같이 補完한다.

特許明細書의 補正

(11) 公開番號

(51) 國際特許分類

(45) 特許明細書의 公開日字

補正決定日字

(EPO Journal)

美國 니스協定批准書寄託

—84. 2. 29 發效—

美國은 스톡홀름에서 1967年 7月 14日 改正된 니스協定(1957. 6. 15) 제네바條例(1957. 5. 13)의 批准書를 1983年 11月 29日에 寄託하였다.

同協定 제네바 條例는 美國에 대하여 1984年 2月 29日에 發效한다.

(WIPO 提供)

토고 나이로비條約加入

—칠레도 加入—

1981年 9月 26日 나이로비에서 採擇된 올림픽記章保護를 위한 나이로비條約의 批准書를 토고는 1983年 11月 8일에, 칠레는 1983年 11月 14일에 각각 寄託하였다.

同條約는 토고에 대하여 1983年 12月 8일에, 칠레에 대하여는 1983年 12月 14일에 각각 發效하였다.

나이로비告示 No. 16, 1983. 11. 11. No. 17, 1983. 11. 16.

(WIPO 提供)

르완다 WIPO加入書寄託

—파리協約加入書도 寄託—

르완다는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에서 調印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設立協約의 加入書와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1983. 3. 20) 스톡홀름條例(1967. 7. 14)의 加入書를 1983年 11月 3일에 각각 寄託하였다.

르완다는 파리同盟豫算分擔金等級 7에 속하여 改正파리協約은 1984年 3月 1일에 WIPO設立協約은 1984年 2月 3일에 각각 發效한다.

(WIPO 提供)



坦자니아 WIPO·파리協約加入

—83年 12月 30日 各各發效—

坦자니아는 1883年 3月 20日 締結된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의 스톡홀름改正協約(1967. 7. 14) 加入書와 1967年 7月 14일 스톡홀름에서 調印된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設立協約의 加入書를 1983年 9月 30일에 각각 寄託하였다. 탄자니아는 파리協約加入書에 第1~12條의 適用을 留保한다는 宣言을 하였으며 파리同盟豫算分擔金 等級 7에 속한다.

파리協約과 WIPO設立協約은 탄자니아에 대하여 1983年 12月 30일에 각각 發效한다.

(WIPO 提供)

말레이지아 特許法制定

—84年 1月 施行 豫定—

最近 말레이지아의 特許法이 國會에서 通過되어 1984年 1月에 施行될 豫定으로 있다.

이 新特許法에 의하여 말레이지아는 英聯邦의 일원으로서 獨自的인 特許審查 및 登錄을開始하게 되었다.

同法이 施行되어도 英國特許法에 의거한 現存하는 登錄 및 申請中の 特許出願에 대해서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將來에 할 登錄申請을 法律施行前에 하면 諸費用 및 時間을相當히 節減할 수 있다. (特許 News 提供)

英 24年有效技術獨占權종식 계획

—新技術活用擴大 위해—

英國은 國營 研究所나 國立 大學에서 開發된

技術에 대해 賦與한 24年間의 獨占權을 종식시킬 計劃이다.

이러한 獨占은 英國의 科學과 技術을 外國의 盜用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해 國立研究·開發社(NRDC)에 대해 1949년에 처음으로 賦與한 이래 存續해왔었는데 대처 수상은 이와 같은 獨占이 他人을 制約하고 있으며 英國이나 外國의 利害關係者들의 新技術活用을 저해한다고 말한 바 있다.

(World Technology)

日通產省 소프트웨어 登錄센터 設立方針

—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위해—

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를 위한 法案인 소프트웨어權法(假稱)의 制定을 서두르고 있는 日本通產省은 同法을 運用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開發者的 權利를 保障하는 前提條件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申請·登錄 및 審查業務를 행하는 컴퓨터소프트登錄센터(假稱)를 創設하기로 方針을 굳혔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申請·登錄을 一元化하고 모로써 소프트웨어의 使用權과 複製權을 確立함과 同時に 소프트웨어 情報를 公開하여 流通促進을 圖謀하기 위해서다.

同센터는 公益法人格을 갖는 團體로서 通產省等의 關係省·廳의 業務를 代行하여 소프트웨어의 登錄接受, 情報의 保管, 形式審查등을 다루는 機關으로서 役割을 하게된다.

(特許 News 提供)